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135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2 |
| 1. 모범납세자 존중 문화 조성 체계 마련(임광현의원안) ..... | 2 |



## I. 개요

### 1.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135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광현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4. 10. 31.
- (3) 회 부 일 : 2024. 10. 31.

#### 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로서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세무조사, 불성실가산세 등 제재 수단은 규정하고 있으나 성실한 납세자를 위한 제도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 세무조사 유예를 허용하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와 자진납부한 세액에 비례하는 세금포인트를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0 신설).

## II. 주요 내용별 검토

### 1. 모범납세자 존중 문화 조성 체계 마련(임광현 의원안)

| 현 행     | 개 정 안                                                                                                                                                                                                                                                                                                                                                                                                                                                                                                                                                                                |
|---------|--------------------------------------------------------------------------------------------------------------------------------------------------------------------------------------------------------------------------------------------------------------------------------------------------------------------------------------------------------------------------------------------------------------------------------------------------------------------------------------------------------------------------------------------------------------------------------------|
| □ <신 설> | <p>□ 모범납세자 존중 문화 조성 등(제81조의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장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자(이하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회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해당 모범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 고지의 유예, 체납액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의 유예 등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이 경우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체납 기록, 조세포탈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모범납세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li> <li>○ 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한 세액에 비례하는 세금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향후 세금 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li> <li>○ 국세청장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li> </ul> |

\* 임광현의원안 2024. 10. 31. 발의(의안번호 5135)

□ 개정안은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와 ‘세금포인트 제도’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현재 국세청은 국세청 훈령인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 납부기한 등의 연장,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운영 등의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법령상 근거 없는 예산사업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시 납세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을 지원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우대 제도 등이 법령상 근거 없이 운용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와 ‘세금포인트 제도’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임.

또한, 세금포인트 제도 등의 예산사업이 개정안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사업이 된다면 예산의 확보도 보다 용이해질 수 있는 점을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개정안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까지 적시하여 이를 강행규정화 하기보다는 대략적인 법적 근거 규정(가령, 성실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을 마련한 후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가령, 세금포인트 제도의 경우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매년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하위 법령

에 근거를 두는 것이 개선에 용이하기 때문임.

|       |
|-------|
| 문 의 처 |
|-------|

|              |
|--------------|
| 02)6788-5147 |
|--------------|